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54
----------	-----

제출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며, 축제 보조금 지원 및 투명한 사후 관리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 지역축제 지원 목적과 대상 및 책무를 명시(안 제1조 내지 제3조)
- 나. 축제 지원대상 명시(안 제4조)
- 다. 효과적인 보조금 신청·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 내지 8조)
  -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 마련 포함
- 라. 축제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축제심의위원회 구성(안 제9조 내지 13조)
- 마. 객관적인 축제 평가와 정보공개 근거 마련(안 제14조 내지 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17조, 제32조의 2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9.3~9.2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권고사항 반영)

개선권고 사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 제3조제4호의 소규모 지역축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li><li>- 안 제7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사유를 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그 밖의 사유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제2항에서 교부 취소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개별조례에서 별도의 교부 취소사유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은‘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조례로써 차기년도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li><li>- 안 제10조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은 1회에 한정. 당연직 위원의 임기도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li><li>- 안 제14조 :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해촉 사유는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본 조를 삭제하고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li></ul>	반영 완료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축제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역축제협회”란 군에서 개최되는 각 축제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되고 군에 그 현황을 제출한 평창군 축제 발전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2장 지원사업

제4조(지원대상) 축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축제 기반시설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축제협회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10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경비의 적정성, 보조금 교부 목적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그 축제 종료 30일 이내에 해당 보

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관계 규정에 맞게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3.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3장 축제 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 문화·관광관련 단체 관계자
2. 국내 축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창군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지원신청 축제의 보조금 교부규모
2. 지원대상 축제 선정
3. 1억 원 이상의 지원축제. 다만, 국·도비지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축제 일몰제(3년을 말한다)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평가 및 반영)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축제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보조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축제추진 결과보고서를 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단체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제4조(보조금 지원)

-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군 축제 기반시설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축제협회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연락처	(033) 330 -2466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